

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19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11. 15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개정이유

-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저촉우려가 있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하며,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으로 저촉우려가 있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(안 제6조 제2항).

나.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

제정(개정)조례안 : 붙임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

-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4조, 제24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1. 10. 4. ~ 10. 24.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붙임

- 현행조례(전문)
- 관계법령발췌

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

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해빛나길 56번지(본오동)” 을 “샘골서길 64번지(본오동)” 로 한다.

제5조 중 “시장은” 을 “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” 으로 한다.

제6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2인” 을 “2명” 으로 한다.

제15조제4항중 “통할” 을 “총괄” 로 한다.

제19조 중 “범위 안” 을 “범위” 로 한다.

제20조제3항 중 “범위 안” 을 “범위” 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범위 내” 를 “범위”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문화예술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문화예술과장 안 상 철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문화시설계장 이 종 규
	담당자 성명·전화	이 세 나 (행정 3040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위치) 최용신기념관(이하 “기념관”이라 한다)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<u>해빛나길 56번지(본오동)</u> 에 둔다.	제2조(위치) ----- ----- <u>샘골</u> <u>서길 64번지(본오동)</u> -----.
제5조(관람시간) ①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 ①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념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	제5조(관람시간) ----- -----. ① <u>안산시장</u>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----- ----- -----.
제6조(관람금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. 1. (생략) 2. 보호자가 없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3~5. (생략)	제6조(관람금지)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3~5.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유물구입) ①(생략) ②매입신청된 유물에 대하여는 제11조에 따른 유물감정평가위원 <u>2인</u> 이상의 감정평가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.	제10조(유물구입)①(현행과 같음). ②----- ----- <u>2명</u> ----- ----- -----.
제1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③ (생략)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⑤ ~ ⑥ (생략)	제1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<u>총괄</u> ----- ----- -----. ⑤ ~ ⑥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<p>제19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19조(수당 등) ----- ----- 범위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0조(유물의 관리 등) ①(생략) ②(생략) ③시장은 유물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유물에 대하여 열람, 복제를 허가 할 수 있다.</p>	<p>제20조(유물의 관리 등) 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범위----- -----.</p>
<p>제21조(유물의 대여) ①시장은 기념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을 대여할 수 있다.</p>	<p>제21조(유물의 대여) ①----- ----- 범위----- ----- -----.</p>